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690호

나. 발 의 자 : 아이수루 의원(찬성자 15명)

다. 발의일자 : 2026년 5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2. 제안이유

- 최근 국제문화행사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도시 브랜드와 국제 교류, 관광산업, 다문화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도시로서 국제문화행사 개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청년·관광·국제교류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2026년 4월 제정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마.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바. 민관협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자.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차.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개요

- 동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제문화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재정지원, 민관협력, 위원회 설치·구성, 실태조사 및 연구,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국제교류, 문화예술, 관광, 도시브랜드 측면에서 국제문화행사 개최 수요가 높은 도시이므로, 상위법에 맞추어 서울시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한류 확산과 문화산업의 성장으로 국제문화행사는 단순한 공연·전시·축제의 영역을 넘어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문화교류,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갖는 행정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동안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은 개별 행사에 대한 특별법, 중앙정부 훈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업 등에 의존하여 추진된 측면이 있었으나, 문화 분야 국제행사에 특화된 일반법이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¹⁾되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입법적 의미가 있음.
- 특히 서울시는 세계적 문화도시이자 우리나라 국제관광·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대규모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가능성이 높고, 행사 개최 시 교통·안전·의료·홍보·관광·시설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지원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상위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자치법규 입안 시에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현행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영역을 중복 규율함으로써 법체계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 제정안에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1) 2025-11-07 발의 / 2026-03-31 본회의 가결 / 2026-04-28 공포 / 2026-10-29 시행(예정)

된 사항 외에 국제문화교류, 도시외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는 사항들은 각각 기존의 타 법령 및 현행 조례 등을 따라 규정할 것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제정안의 구조

- 동 제정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시장의 책무 ►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지원사업 ► 제6조 재정지원 ► 제7조 민관협력 ► 제8조 위원회의 설치 ► 제9조 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실태조사 및 연구 ► 제11조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 ► 제12조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	주요내용
제1조 목적	국제문화행사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제2조 정의	국제문화행사, 주관기관, 다문화 국제행사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문화다양성 강화, 다문화가족 문화 참여 지원
제4조 기본계획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청년·지역문화 연계 포함
제5조 지원사업	국제문화행사 운영, 교류사업, 청년·예술인 교류,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제6조 재정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7조 민관협력	국내외 기관·단체·대학·기업·국제기구 협력
제8조·제9조 위원회	지원정책, 기본계획, 지원대상 선정 등 심의
제10조 실태조사 및 연구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제11조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	해외 도시·국제기구 협력, 도시외교 자산 활용
제12조 표창	국제문화행사 발전 및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기여자 표창

- 동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조례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 외에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도시외교, 다문화가족 참여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조사, 표창 등 여러 타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제정안의 구조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운영·안전·홍보·협력 등 행사 지원에 직접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주요 내용별 검토

(1) 체계정당성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자치법규는 개별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법체계 안에서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특히 동일한 정책대상이나 사업영역을 여러 조례에서 중복 규율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혼선, 계획체계의 중복, 예산지원 근거의 중첩, 위원회·협의회 기능의 중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 단계에서 체계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규율 대상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제정안은 목적, 책무, 기본계획, 지원사업, 민관협력, 국제협력 및 표창 규정 전반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 도시외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에서 이미 종합적인 시책 수립, 진흥계획, 협의회, 사업,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및 포상까지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범위, 지원시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까지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안이 이들 사항을 다시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국제문화행사 개최와 직접 관련된 범위로 규정을 축소하거나 기존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특히 안 제2조제3항의 다문화 국제행사, 안 제3조제3항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문화 참여 확대 지원정책, 안 제4조제2항 제4호의 다문화·청년·지역문화 연계 사업, 안 제5조제7호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안 제1조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안 제3조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안 제4조제2항제3호의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활성화, 안 제7조제2항의 민간교류 및 도시외교 활성화, 안 제11조의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 안 제12조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기여자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규정과도 중복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체계정당성 및 다른 조례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고, 중복될 여지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치법규 입안 형식 및 조문 체계

- 자치법규는 정책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조례의 제명, 목적, 정의, 책무, 지원사업, 위원회, 재정지원, 위탁, 부칙 등 조문 전반이 상호 모순 없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미 존재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도 명확히 정리되어야 함.
- 특히 동 제정안에서 제명은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나, 목적과 주요 내용에서는 “국제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도시외교”, “다문화가족 지원”, “청년·예술인 교류” 등 보다 넓은 정책영역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조례의 제명과 목적은 해당 조례의 규율대상과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국제문화행사 지원”이라는 제명에 따라 본문 역시 국제문화행사의 개최와 운영에 직접 필요한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제명과 목적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1조의 “지원 및 육성”은 “원활한 개최 지원” 등의 표현으로 정비하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나 도시외교 등은 국제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법이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조례의 목적 또한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와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는 국제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정책적 효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미 별도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직접 목적에 포함하는 것은 중복 입법의 소지가 있음.
- 안 제2조제1항은 국제문화행사를 문화·예술·관광·전통문화·생활문화·체육·다문화·국제교류 분야에서 국내외 참가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법 제2조에 따른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국제문화행사”란 문화·예술·관광·전통문화·생활문화·체육·다문화·국제교류 분야에서 국내외 참가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로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사를 말한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문화행사”란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 나. 외국인 참가자의 비율이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행사
 - 다. 국제적으로 문화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

- 그러나 조례에서 체육, 다문화, 국제교류 등 분야를 별도로 열거할 경우 상위법상 국제문화행사보다 넓은 범위의 행사가 동 조례의 지원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체육 분야는 별도의 국제경기대회 지원체계가 존재하고, 다문화 및 국제교류 분야도 서울시의 기존 자치법규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정의 규정은 상위법상 정의를 따르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또한 안 제2조제3항은 “다문화 국제행사”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 참여와 교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제문화행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보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규율영역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됨.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③ “다문화 국제행사”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 참여와 교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제문화행사를 말한다.

- 또한 “주관기관”은 정의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후 조문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권리·의무의 주체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정의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임.

정의규정은 조례 해석상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용어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는 삭제하거나 관련 조문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례 간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원 안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문화행사”란 문화·예술·관광·전통문화·생활문화·체육·다문화·국제교류 분야에서 국내외 참가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로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사를 말한다. ② “주관기관”이란 국제문화행사를 기획·운영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다문화 국제행사”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 참여와 교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제문화행사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국제문화행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행사를 통하여 서울시의 문화 다양성과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행사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의 문화 다양성과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인정됨.
- 다만, 안 제3조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는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규율대상이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문화 참여 확대”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규율대상이므로 규정 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안에서 이를 시장의 책무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중복될 수 있으며, 조례의 목적을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취지와도 다소 거리가 있음.
- 또한 안 제3조제1항은 시장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문화행사는 행사별 개최 여부, 규모, 주관기관, 재정지원 필요성 등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시장에게 포괄적인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다소 과도할 수 있음.
- 안 제4조는 시장이 국제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국제문화행

사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육성 및 지원 방안, 국제교류 및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 다문화·청년·지역문화 연계 사업 지원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국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방안
3.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
4. 다문화·청년·지역문화 연계 사업 지원 방안
5. 국제문화행사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해당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다시 두는 것은 계획체계의 중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국제문화행사는 개별 행사별 개최 주체, 규모, 성격, 재정 지원 방식이 상이하므로, 장기적 기본계획보다는 필요한 경우 행사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해 보임.

(5)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는 국제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및 운영 지원
- ② 국제 전통문화·생활문화 교류 사업
- ③ 국제 청년·예술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
- ④ 국제문화행사 홍보 및 관광 연계 사업
- ⑤ 국제회의·포럼·전시·공연 개최 지원
- ⑥ 국제문화행사 관련 교육 및 연구 사업
- ⑦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및 운영, 홍보, 관광 연계 등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직접 관련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국제 전통문화·생활문화 교류, 국제 청년·예술인 교류, 교육 및 연구 사업은 국제문화행사의 부대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국제문화행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독립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의 규정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별도로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아울러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은 실제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므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지방보조금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안 제6조는 시장이 국제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재정지원 근거 자체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나, 지원대상이 국제문화행사의 개최·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조례상 사업까지 포괄하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2. 교통·통신·전력·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
3.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4.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
5.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6.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7.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원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6) 민관협력 및 위원회 설치(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안 제7조는 시장이 국제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국제문화행사와 연계한 민간교류 및 도시외교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7조(민관협력)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와 연계한 민간교류 및 도시외교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 국제문화행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민간단체·문화예술기관·기업·대학·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관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민간교류 및 도시외교 활성화”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및 운영과 직접 관련된 협력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 및 제9조는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 및 기본계획
2. 국제문화행사 지원 대상 선정
3. 국제교류 및 민관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문화·예술·관광·국제교류·다문화 분야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제문화행사 지원계획, 관계기관 협력,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에 따라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재정지원이 지방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원회가 “국제문화행사 지원 대상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심의절차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별도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를 유지할 경우에도 그 기능은 지원 대상의 선정이 아니라 국제문화행사 지원정책, 행사별 지원계획, 관계기관 협력방안 등에 대한 자문 기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았으므로 개별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의 구성 또한 국제문화행사 분야로 조정해야 할 것임.

(7) 실태조사 및 연구(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시장이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수요,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 시민참여, 안전관리, 교통·숙박·시설 수요 등을 조사·연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다른 기관 또는 민간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게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

므로, 단순한 조사·연구용역까지 포괄하여 “위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8)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시장이 국제문화행사를 통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국제문화행사를 서울의 도시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11조(국제협력 및 도시외교)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를 통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행사를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국제문화행사가 해외 도시, 국제기구, 외국 문화예술기관 등과의 협력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 근거를 두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나, “도시외교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표현은 선언적·추상적 성격이 강하고,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규정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단체·법인, 대학 등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표창(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시장이 국제문화행사의 발전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12조(표창)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발전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표창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마찬가지로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함한 표현은 수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9조(포상)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0) 시행일(안 부칙)

- 동 제정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조례의 정의·지원범위·지원절차가 법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상위법 시행 전에 조례가 먼저 시행될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을 근거로 정의와 지원체계를 운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법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시행일은 상위법 시행일 이후 필요한 하위규정 정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종합의견

- 동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국제문화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고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는 인정됨.
- 서울시는 국제문화교류, 문화예술, 관광, 도시브랜드 측면에서 국제문화행사 개최 수요가 높은 도시이므로, 행사장·공간 제공, 기반시설 정비, 안전·의료·교통 지원, 홍보, 민관협력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자치법규는 상위법령뿐만 아니라 다른 현행 자치법규와의 조화 속에서 체계적으로 입안되어야 하는데, 동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도시외교, 다문화가족 지원, 청년·예술인 교류, 전문인력 양성, 연구·조사 및 표창 등 여러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기존 조례와의 중복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동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지원 근거로 범위를 축소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및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각각 기존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취지와 내용의 유사성이 보이는 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